##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23. 11. 17.] [행정안전부령 제436호, 2023. 11. 7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) 044-205-2463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·변경 통보 서식)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·변경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제3조(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) ① 법 제18조제1항 · 제27조제5항 및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(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  -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(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**제4조(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)**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(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**제5조(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)**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(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제6조(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·중단 통보 서식)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·중단 통보서(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제7조(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)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(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)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(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)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제8조(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)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1. 22.>
  -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  -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(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  -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- **제9조(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)**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)**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 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따른다.

부칙 <제436호,2023. 11. 7.>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보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"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"를 "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"로 한다.
  - 7.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,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・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